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4. 11. 19.(수)

보도자료	2014년 11월 19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 열 과장(☎2110-1520)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이경은 주무관(☎2110-1527)

방통위, 제3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현안 의견수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1월 20일(목) 10시 잠실 광고문화회관(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4 제3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이다.

먼저 '신규 IT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의 기조연설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신 산업 발달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방안' 세션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등이 논의된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세션의 경우, 방통위가 작년 12월, 금년 3월, 6월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토론회이다. 그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최종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학계·법조계·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방통위가 지난 11월 12일 발표한「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아울러, 오는 11월 29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14.5.28) 중 개인정보 관련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1. 제3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계획.
2.「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주요내용.
3.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사항.

[붙임1]

제3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계획

◇ (목적)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전방향 모색

□ 행사 개요

o (일시/장소) '14.11.20(목) 10:00~18:00/잠실 광고문화회관(그랜드볼룸 2F)

o (주최/주관) 방송통신위원회(KCC)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o (참석 대상) 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기관, 이통 3사・포털 등 사업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등 250 여명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10:00 ~ 12:00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등 정책설명** -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 '14.11.29) - (참석) 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14:00 ~ 14:05 (5분)	**[개회 및 인사말]**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14:05 ~ 14:35 (30분)	**1 Key Note Speech** - (주제) 신규 IT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14:40~16:00 (80분)	**2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보호 방안'** - (토론) 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16:05~18:00 (115분)	**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 (토론) 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18:00	**[폐회]**

[붙임2]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 사업자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보관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단계별** 수집·파기·동의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

◇ 이용자가 사업자로부터 **동의내용**을 **명확**하게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뢰**에 **기반**한 개인정보 **이용 관행 유도**

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 관련)

▶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필수적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 필요한 시점이 아님에도 회원가입 시 **"미리"** 동의를 받아 **수집**

▶ (예) 회원가입 시 홈페이지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처·결혼 여부 등을 수집 동의 요구하거나 배송지 주소를 미리 요구

○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필수동의 항목)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그 외 선택동의 항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예) 인터넷 회원제 서비스 : [필수동의 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선택동의 항목] 마케팅 목적의 연락처, 결혼정보 등

○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 (예) 인터넷 쇼핑몰 : [회원가입 단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만 수집 → [결제·배송단계] 결제·배송정보 수집

○ 불필요하게 "이용자 본인확인"(휴대전화, 아이핀, 공인인증서, 기타)을 강제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 (이용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법률 상 의무이행(나이, 본인, 실명확인 등), ② 서비스 특성 상 명의도용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등

○ 자동수집장치에 의해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예: 쿠키), 이용내역정보(예: 거래기록),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예: 요금액)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함

2 단계별 개인정보의 파기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9조 관련)

▶ 개인정보 관리단계(수집-제공-파기)에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의 파기조치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자는 파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관**

▶ (예)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의 기준이 없어 사업자 판단이 곤란

○ (수집·보관 단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고, 파기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파기

- 확인만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 경우*에는 저장을 제한하고,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관 최소화 방안'을 내부관리계획(망법 제28조)에 반영

* 명의도용 방지 목적으로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여부 확인 시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장하지 않고 즉시 파기

-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고 내·외부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

○ (제공 단계) 서비스와 무관한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확인 등 조치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 취급위탁 계약서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파기 확인 사항을 명시한 후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서비스 계약 이행 또는 이용자 혜택 부여와 관련이 있는 경우

○ (파기 단계) 파기 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파기하되, 복구·재생할 수 없는 파기방법*을 적용

< 복구·재생할 수 없는 파기 방법(예시) >

· (개념) 사회 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

· (예시①) 하드 디스크 등 매체 전체 데이터 파기의 경우 여러 번 덮어쓰기(wiping) 방법 또는 천공, 소각, 강력한 전자기적 파기(Degaussing) 방법 등을 이용

· (예시②) 서비스 중인 DB의 일부 데이터를 파기하는 경우 임의의 값으로 덮어쓰기한 후 삭제하는 방법 등을 이용

3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 관련)

▶ 동의서 서식을 **사업자 위주**로 작성, 이용자가 **읽지 않고 동의**하도록 **유도**

▶ (예) 불필요한 내용을 작은 글씨·장황한 서술 등으로 표현하여 읽기 어렵게 고지

○ "법정 고지사항"만을 간결하게 고지하고, "쉬운 용어", "중요내용*은 빨간색, 굵은 글씨 등" 등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표시

* 선택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 중요 보유기간 등

○ 필수동의 항목과 그 외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의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동의서 서식 개선

- (인터넷 동의) 글자체와 글자크기는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 하되, 이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조합

* (예시) PC의 운영체제(OS)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글자체를 사용하고, 글자크기는 웹사이트 구현시 기본크기 이상으로 설정

- (서면 동의) 글자크기, 줄간격 등을 확대)하여 읽기 쉽게 개선

※ (예시) 항목구분 글자는 최소 12p, 본문글자 최소 10p, 줄간격 130% 이상

○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붉은색, 굵은 글씨 등'으로 표시

-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과 선택적인 사항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시) ① [필수] 필수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② [선택]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③ [선택] 취급위탁 동의→④ [선택]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함"에 미리 표시할 수 없도록 함

※ 선택 결과를 주어지게 구성(default 설정)하지 않아야 함

[붙임3]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사항

1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법 제23조제3항 신설)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는 규정 신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동의 예외 요건 강화(법 제25조의제2항 개정)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시 동의 예외 요건으로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

3 개인정보 유출기업 처벌 강화(법 제64조의3제1항 개정)

○ 개인정보 관련 위반 행위 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1억원 →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하여 사업자 책임 강화

4 개인정보 관련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법 제32조의2 신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개인정보 누출시 신고·통지 강화(법 제27조의3제1항 개정)

○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현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서는 아니됨을 명시

6 개인정보 사전 유출 방지 및 파기 조치 강화(법 제29조제1항 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